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2.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월 21일 송병길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01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2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송병길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 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마포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안 제3조)
-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5조)
-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안 제6조)
- 하도급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안 제7조~제9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사용(안 제10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하도급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와 부조리를 방지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1조~제12조)
- 이행실태 점검(수시, 정기) 및 평가(안 제13조)
- 마포구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6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목적)~안 제2조(정의)에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나. 안 제3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 다.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정책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공정 하도급 문화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함
 - 라. 안 제7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서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 마. 안 제8조(하도급직불제)에서는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급대금 체불제)하고,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

- 바. 안 제9조(지급확인시스템 적용)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함,
 - 다만,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안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균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함
- 아. 안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는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사 계약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 안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에서는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며, 또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불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히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하였음.
- 차. 안 제13조(점검 및 평가)에서는 구청장이 정기 및 수시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카. 안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과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도급 관련 업무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무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도급 관련부조리를 근절함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주요사유로는 계약체결 담당부서에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불성실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시행과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등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부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하도급 부조리 계약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향후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2016.1.25.~1.2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타 관련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

됨이 없으며, 또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미 관악구와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른 자치구별 ‘대금e바로’ 의무 적용 권고 정책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은 물론 효율적인 공정 하도급 관행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 센터 ” 운영실적 】

- 우리 구에서는 2011.4.1일부터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이 접수되어 조사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